

의안번호	제 156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5월 일 (제 300 회)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5월 2일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156 호
----------	---------

제출연월일 : 2011년 5월 2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옥천읍 내에 위치하여 장비 진출입시 교통난 가중, 소음 등으로 인한 외곽지로의 이전요구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 현 청사가 노후(1964.11신축)되고 사무 공간 협소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보유 장비를 인근 옥천읍사무소에 주차함으로써 도난 및 파손 위험이 상존하고 자재창고 및 방화사적치장 등의 부대시설 부지가 부족하여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의 능월 분교를 매입, 이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부지 및 건물 취득》

- 위 치 :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 외 1필지(능월분교)
- 취득규모 : 토지 15,575㎡, 건물 1,113㎡(6동)
- 사업기간 : 2011. 6 ~ 2011. 12
- 사 업 비 : 806백만원

□ **재산의 처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13
- 처분규모 : 토지 939㎡, 건물 166㎡(3동, '64. 11 신축)
- 처분시기 : 2011. 10월 이후(옥천지소 이전 후)
- 처분가액 : 1,134백만원 정도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5,575	545,125				
	건물	1 건	1,113	261,153				
	기타							
1	토지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외 1필지	15,575	545,125	2011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충청북도 교육감	
	건물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외 1필지	1,113	261,153	2011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충청북도 교육감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 201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939	1,119,945				
	건물	1 건	166	14,032				
	기타							
1	토지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13	939	1,119,945	2011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충청북도	
	건물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13	166	14,032	2011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충청북도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6	토지							
	건물							
	기타							

# 관계 법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b>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